



# 시 보



제1492호 2021. 4. 12.(월)

## 공 고

-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2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5
-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9
-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2
-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16
-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21
-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27
-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9
-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33
-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 37
-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41
-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43
-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61

## 기 타

- 목포시 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 64

회람							
----	--	--	--	--	--	--	--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1 호

###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목포시가 주최·주관하여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2. 사업 타당성
- 3. 주요정책관련 주민의견 청취
- 4. 재정 등 부서협의
- 5.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목포시(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2 호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확정기준)”을 “(획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반은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 ② 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 ③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등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획정기준과 다르게 통·반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4명”을 “5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기적용은 임기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제7조제3호 중 “과약과 반적부 정리”를 “과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진시”를 “전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장”을 “시장은 통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반장은”을 “통·반장은 통·”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확정기준) <u>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①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②통은 4개반부터 6개반까지로 구성한다.</p> <p>&lt;신 설&gt;</p>	<p>제3조 (확정기준) ① 반은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p> <p>&lt;삭 제&gt;</p> <p>② 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p> <p>③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등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기준과 다르게 통·반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①·② (생략)</p> <p>③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공고 후 동장이 인정하는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심사위원은 동장 외 4명(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2명)으로 한다.</p> <p>④·⑤ (생략)</p> <p>&lt;신 설&gt;</p>	<p>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5명----- ----- 3명)-----.</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기적용은 임기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p>

<p>⑥ (생 략)</p> <p>제7조 (임무) 통, 반장은 시장,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p> <p>1. · 2. (생 략)</p> <p>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u>과약과 반적부 정리</u></p> <p>4. ~ 6. (생 략)</p> <p>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u>진시</u>에 한함)</p> <p>8. (생 략)</p> <p>9. <u>지방세 고지서 등 각종고지서 (독촉장), 통지서 교부</u></p> <p>10. · 11. (생 략)</p> <p>제14조(사기진작) <u>통장</u>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제15조 (금품 징수의 금지) <u>반장</u>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 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p>	<p><u>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u></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7조 (임무)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과약</u></p> <p>4. ~ 6. (현행과 같음)</p> <p>7. ----- <u>전시</u>-----</p> <p>8.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10. · 11. (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기진작) <u>시장</u>은 <u>통장</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5조 (금품 징수의 금지) <u>통·반장</u>은 <u>통·</u> ----- -----.</p>
-------------------------------------------------------------------------------------------------------------------------------------------------------------------------------------------------------------------------------------------------------------------------------------------------------------------------------------------------------------------------------------------------------------------------------------------------------------------------------	-------------------------------------------------------------------------------------------------------------------------------------------------------------------------------------------------------------------------------------------------------------------------------------------------------------------------------------------------------------------------------------------------------------------------------------------------------------------------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3 호

###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4 호

###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4.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5 호

###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정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6 호

###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목포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7 호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시 설치조건은 가스시설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 100세대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검사 및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8 호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사업단장**”를 “**기획, 관광, 경제, 일자리, 도시재생 관련업무 과장급 5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를 “**청년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청년정책 업무담당 과장**”을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u>시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u>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사업단장</u>으로 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u>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u> 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 ----- <u>부시장</u> ----- ----- -----.</p> <p>② ----- ----- <u>기획, 관광, 경제, 일자리, 도시재생 관련업무 과장급 5명 이내</u> ----- ----- -----.</p> <p>③ ----- ----- ----- <u>청년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청년정책 업무담당 과장</u>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담당업무 팀장</u> -----.</p> <p>④ (현행과 같음)</p>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9 호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항해·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 등을 위한 계류시설·수역시설·외곽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시설 조성
2.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3. 해양레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목포시의회의원
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기관·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60 호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 3. “수산업”이란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 4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목포시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부터 제78조를 따른다.
- ③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공공이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 6. 어업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제7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장은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 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 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 8.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 9.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 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 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제8조(지원신청) ① 어업인 등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결정) ① 어업인 등이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 어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목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목포시 수산업육 성 및 해양수산사업 관련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61 호

###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은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의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연구,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3. 안전 관련 시설 설치·운영, 설비개선 지원, 물품 보급 및 장려
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안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와 협조체제 구축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7.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민에게 안전용품, 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안전도시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겸임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
4. 민·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
5.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겸임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62 호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5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가스·전기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63 호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 2. 교육일시 및 장소
- 3. 교육내용 및 방법
-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 5.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
- 6. 교육비 수입·지출 계획서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예상 참석인원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③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정기교육은 반기별로 하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64 호

###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 1 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시설설치 소요비용은 소각시설의 설치비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 1 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 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p>1. (생 략)</p> <p>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와 같다</p>	<p>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 1 의 규정을 따른다.</p>
<p>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p> <p>① <u>납부금액 중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u></p> <p>1. <u>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u></p> <p>2. <u>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u></p>	<p>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p> <p><u>시설설치 소요비용은 소각시설의 설치비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 1 의 규정을 따른다.</u></p>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요면적	비 고
폐 기 물 처 리 시 설	100톤/일 이하	40㎡/톤	1기 기준 4,000㎡이하
	100~300톤/일	30㎡/톤	1기 기준 4,000㎡이하
	300~500톤/일	20㎡/톤	1기 기준 4,000㎡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1기 기준 4,000㎡이하
관 리 동	500톤/일 이하	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 차 동 등 기 타 시 설	500톤/일 이하	330㎡	-
	500톤/일 초과	500㎡	-
건 폐 율		40% 이하	계 획 단 지 역 기 준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 총 부지면적 = 시설지면적(가) + 주민편익시설면적(나) + 주변녹지대면적(다)

<삭 제>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65 호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재활용선별장의 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9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1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수도사업단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자원순환과장
- 2. 목포시의회 의원 1명
- 3. 목포시 환경관련시민단체 대표 1명
- 4. 그 밖에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직위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 활용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앞에 “제3장 재활용선별장의 설치·운영”을 삽입한다.

제29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제7조 (생 략)</u> <u>&lt;신 설&gt;</u></p>	<p><u>제16조 (현행 제7조와 같음)</u> <u>제8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u> 1. <u>기금 운용계획의 수립</u> 2. <u>기금결산에 관한 사항</u> 3. <u>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u></p>
<p><u>제8조 (생 략)</u> <u>&lt;신 설&gt;</u></p>	<p><u>제17조 (현행 제8조와 같음)</u> <u>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환경수도사업단장이 된다.</u> <u>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1. <u>자원순환과장</u> 2. <u>목포시의회 의원 1명</u> 3. <u>목포시 환경관련시민단체 대표 1명</u></p>

제9조 (생략)

<신설>

제10조 (생략)

<신설>

<신설>

제11조 (생략)

<신설>

<신설>

4. 그 밖에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1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직위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3장 재활용선별장의  
설치·운영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신 설>

<신 설>

제3장 재활용선별장의 설치·운영  
제12조 ~ 제19조 (생 략)

제4장 보 칙

<신 설>

제20조 · 제21조 (생 략)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활용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1조 ~ 제28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보 칙

제29조 · 제30조 (현행 제20조 및 제2  
1조와 같음)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66 호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유달경기장, 유달시립정구장”을 “유달시립정구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정의) ----- -----.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유달경기장, 유달시립정구장,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유달검도체육관, 유달 게이트볼구장,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부주산 테니스장,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부주산축구장, 부주산족구장,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영산호카누경기장 으로 한다.	1. ----- ----- 유 달시립정구장----- ----- ----- ----- ----- ----- ----- ----- ----- ----- -----.
2. ~ 17. (생략)	2. ~ 17. (현행과 같음)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유달경기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검도체육관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 부주산 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
·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
· 부주산 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부주산 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 영산호 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
·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유달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검도체육관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 부주산 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
·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
· 부주산 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부주산 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 영산호 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
·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체육경기				체육경기의				비 고	
	일시사용		주 간		일시사용		주 간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유달 경기장	필드	70,000	9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00,000	240,000	동시 사용
	트랙	30,000	50,000	50,000	70,000	80,000	100,000	120,000	150,000	2할 감
목포실내 체육관	70,000	90,000	90,000	11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200,000	야간 사용5할 가산
실내수영장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다이빙장	70,000	100,000	100,000	15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정구장, 테니스장 (코트당)	-	-	12,000	18,000	-	-	18,000	23,000		야간 사용 5할 가산
목포시공도장	-	-	20,000	30,000	-	-	40,000	60,000		1인당 1사대 주간

\* 비고 : 조례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학교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구분	기준	개 인			단 체			비 고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 발급한 지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 발급한 지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유 달 경기장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목포실내 체육관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 수영장	일련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2주간 기준
	월회원	45,000	35,000	25,00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 영장 사용료(10퍼센트 감면)
	월강습	10,000원 적용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 영장 사용료(10퍼센트 감면)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정구장 테니스장	2시간 기준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중계방송		녹화방송		영화촬영
	TV	라디오	TV	라디오	
유달경기장					TV중계 방송료와동일
목포실내체육관	40,000	30,000	20,000	15,000	
실내수영장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체육경기				체육경기의				비 고	
	일시사용		주 간		일시사용		주 간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목포실내 체육관	70,000	90,000	90,000	11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야간 사용5할 가산	
실내수영장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다이빙장	70,000	100,000	100,000	15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정구장, 테니스장 (코트당)	-	-	12,000	18,000	-	-	18,000	23,000		야간 사용 5할 가산
목포시공도장	-	-	20,000	30,000	-	-	40,000	60,000		1인당 1사대 주간

\* 비고 : 조례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학교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연습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기준	개 인			단 체			비 고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 발급한 지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 발급한 지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목포실내 체육관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 수영장	일련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2주간 기준
	월회원	45,000	35,000	25,00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 영장 사용료(10퍼센트 감면)
	월강습	10,000원 적용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 영장 사용료(10퍼센트 감면)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정구장 테니스장	2시간 기준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체육시설 중계방송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중계방송		녹화방송		영화촬영
	TV	라디오	TV	라디오	
목포실내체육관	40,000	30,000	20,000	15,000	TV중계 방송료와동일
실내수영장					

[별표 5]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전 광 판	라이트(조명)	음향시설
유달경기장	10,000원+실제사용	실제사용관허요금+ ( 기본 수 용 요 금 ×1/30×사용일)	5,000원 × 마이크대수
목포실내체육관	관허요금+(기본수용 요금×1/30×사용일)		
실내수영장			
부주산테니스장	없 음	실제사용관허요금+ ( 기본 수 용 요 금 ×1/30×사용일)	없 음

구 분	전기사용료	냉난방사용료
유달경기장	전기검침기본료 + 실제 사용관허요금	-
목포실내체육관	전기검침기본료 + 실제 사용관허요금	실제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
실내수영장		

[별표 6]

**체육시설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애드 별론	선 전 광 고 게 시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유 달 경기장	1일 1개	소형(10m미만×1.3m) ◦ 5일이내 50,000 1일초과 5,000가산 연간 200,000 중형(20m미만×1.3m) ◦ 5일이내 70,000 1일초과 7,000가산 연간 350,000 대형(30m미만×1.3m) ◦ 5일이내 100,000 1일초과 10,000가산 연간 1,000,000	판매 수입액의 2할
목포실내 체육관	5,000		
실 내 수영장	1일 추가 3,000		

[별표 5]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전 광 판	라이트(조명)	음향시설
목포실내체육관	10,000원+실제사용	실제사용관허요금+ ( 기본 수 용 요 금 ×1/30×사용일)	5,000원 × 마이크대수
실내수영장	관허요금+(기본수용 요금×1/30×사용일)		
부주산테니스장	없 음	실제사용관허요금+ ( 기본 수 용 요 금 ×1/30×사용일)	없 음

구 분	전기사용료	냉난방사용료
목포실내체육관	전기검침기본료 + 실제 사용관허요금	실제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
실내수영장		

[별표 6]

**체육시설 상행위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애드 별론	선 전 광 고 게 시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목포실내 체육관	1일 1개 5,000	소형(10m미만×1.3m) ◦ 5일이내 50,000 1일초과 5,000가산 연간 200,000 중형(20m미만×1.3m) ◦ 5일이내 70,000 1일초과 7,000가산 연간 350,000 대형(30m미만×1.3m) ◦ 5일이내 100,000 1일초과 10,000가산 연간 1,000,000	판매 수입액의 2할
실 내 수영장	1일 추가 3,000		

제36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67 호

###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 말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 1. 의회 운영위원장
- 2. 목포시의회 의원 3명 이내
- 3. 의회 홍보 업무 담당 팀장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위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으로 본다.

-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의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료원 공고 제2021- 5호

### 목포시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지방의료원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의거 목포시의료원 2020년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목포시의료원장 이 원 구

□ 2020년 세입·세출 결산

<b>(1) 현금예금 결산액은</b>	
수 입	35,280,820,310원
지 출	30,659,265,636원
차기이월액은	4,621,554,674원이다.
<b>(2) 재정상태는</b>	
자 산	12,116,594,480원
부 채	8,799,494,892원
자 본	3,317,099,588원이다..
<b>(3) 손익은</b>	
수 익	26,834,250,343원
비 용	25,483,912,428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36,609,505원
당기순이익	1,386,947,420원이다.
<b>(4) 지급능력</b>	
당좌자산	6,592,453,404원
유동부채	3,044,274,116원
차감이월액은	3,548,179,288원이다.

## 가. 재무상태표

제37(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36(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목포시의료원

(단위:원)

과 목	제37(당기)	제36(전기)	차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동자산	7,010,885,355	5,699,735,191	1,311,150,164
(1) 당좌자산	6,592,453,404	5,437,931,553	1,154,521,851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68,645,981	3,777,906,613	(-)1,709,260,632
(국고보조금)	(-)582,557,932	(-)1,352,540,681	769,982,749
2) 단기금융상품	2,567,908,693	-	2,567,908,693
3) 의료미수금	2,580,624,921	3,030,303,341	(-)449,678,420
(의료미수금대손충당금)	(-)58,367,882	(-)34,533,845	(-)23,834,037
4) 기타미수금	8,883,000	5,928,000	2,955,000
5) 선급비용	4,181,613	2,348,145	1,833,468
6) 선급제세	3,135,010	8,519,980	(-)5,384,970
(2) 재고자산	418,431,951	261,803,638	156,628,313
1) 약 품	224,847,691	176,488,428	48,359,263
2) 진료재료	174,542,019	65,635,192	108,906,827
3) 급식재료	1,710,000	1,813,000	(-)103,000
4) 의료부대물품	17,332,241	17,867,018	(-)534,777
II. 비유동자산	5,105,709,125	4,425,883,786	679,825,339
(1) 투자자산	936,972,000	656,972,000	280,000,000
1) 장기대여금	100,000,000	100,000,000	-
2) 보증금	836,972,000	556,972,000	280,000,000
(2) 유형자산	4,168,737,125	3,768,911,786	399,825,339
1) 토지	3,777,770,135	3,375,949,966	401,820,169
(국고보조금)	(-)1,414,545,259	(-)1,280,000,000	(-)134,545,259
2) 건물	26,281,749,030	24,050,925,057	2,230,823,973
(국고보조금)	(-)17,905,425,927	(-)16,387,881,939	(-)1,517,543,988
(감가상각누계액 )	(-)7,804,661,687	(-)7,164,554,013	(-)640,107,674
3) 구축물	427,316,970	427,316,970	-
(국고보조금)	(-)73,651,139	(-)86,043,055	12,391,916
(감가상각누계액 )	(-)189,471,945	(-)167,120,540	(-)22,351,405

과 목	제37(당기)	제36(전기)	차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4) 기계장치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	927,714,015 (-4,379,410) (-860,277,543)	880,820,700 (-57,723,129) (-786,708,618)	46,893,315 53,343,719 (-73,568,925)
5) 의료장비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	8,230,636,860 (-1,493,221,540) (-6,236,501,486)	7,890,987,673 (-1,821,496,964) (-5,448,987,776)	339,649,187 328,275,424 (-787,513,710)
6) 차량운반구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	338,541,946 (-2,000) (-257,758,158)	309,626,076 (-2,000) (-241,007,902)	28,915,870 - (-16,750,256)
7) 공기구비품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	2,695,510,161 (-301,955,166) (-1,968,650,732)	2,397,050,931 (-345,671,338) (-1,776,568,313)	298,459,230 43,716,172 (-192,082,419)
8) 건설중인자산 (국고보조금)	- -	347,467,278 (-347,467,278)	(-347,467,278) 347,467,278
자 산 총 계	12,116,594,480	10,125,618,977	1,990,975,503
부 채			
I. 유동부채	3,044,274,116	2,589,928,532	454,345,584
1) 매입채무	1,749,333,693	1,684,213,047	65,120,646
2) 미지급금	196,803,000	35,445,200	161,357,800
3) 예수금	369,308,790	267,944,880	101,363,910
4) 미지급비용	408,828,633	282,325,405	126,503,228
5) 예수보증금	10,000,000	10,000,000	-
6) 유동성장기부채	310,000,000	310,000,000	-
II. 비유동부채	5,703,168,007	5,516,876,003	186,292,004
1) 지역개발기금	1,860,000,000	2,170,000,000	(-310,000,000)
2)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보험예치금)	7,663,771,881 (-3,820,603,874)	6,845,707,975 (-3,498,831,972)	818,063,906 (-321,771,902)
III. 의료발전준비금	52,052,769	88,662,274	(-36,609,505)
부 채 합 계	8,799,494,892	8,195,466,809	604,028,083
자 본			
I. 기본금(기본재산)	977,671,329	977,671,329	-
1. 법인기본금	977,671,329	977,671,329	-
II. 결손금	2,339,428,259	952,480,839	1,386,947,420
1. 차기이월결손금	952,480,839	(-299,700,239)	1,252,181,078
2. 전기오류수정손실	-	848,661,787	(-848,661,787)
3. 당기순이익	1,386,947,420	403,519,291	983,428,129
자 본 총 계	3,317,099,588	1,930,152,168	1,386,947,420
부채 와 자본 총계	12,116,594,480	10,125,618,977	1,990,975,503

## (2) 손익계산서

제37(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6(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시의료원

(단위:원)

과 목	37(당)기	제36(전기)	차 감
	금 액	금 액	(당기-전기)
I. 의료수익	20,208,826,881	23,450,971,709	(-)3,242,144,828
1. 입원수익	14,642,340,842	17,864,519,218	(-)3,222,178,376
2. 외래수익	4,784,140,709	4,640,341,561	143,799,147
3. 기타의료수익	782,345,330	946,110,930	(-)163,765,600
- 건강진단수익	629,535,170	771,799,970	(-)142,264,800
- 직원급식수익	96,720,000	95,644,630	1,075,370
- 제증명수익	55,742,400	77,047,110	(-)21,304,710
- 구급차운영수익	304,550	1,619,220	(-)1,314,670
- 기타수익	43,210	-	43,210
II. 의료비용	24,754,073,765	23,705,182,448	1,048,891,317
(1) 인건비	15,716,295,901	14,304,849,802	1,411,446,099
1. 급여	14,099,626,790	12,474,727,800	1,624,898,990
2. 제수당	31,595,340	186,802,970	(-)155,207,630
3. 퇴직급여	1,585,073,771	1,643,319,032	(-)58,245,261
(2) 재료비	4,504,891,418	5,046,888,764	(-)541,997,346
1. 약품비	1,090,124,083	1,331,622,633	(-)241,498,550
2. 진료재료비	2,871,506,334	2,997,201,006	(-)125,694,672
3. 급식재료비	543,261,001	718,065,125	(-)174,804,124
(3) 관리운영비	4,532,886,446	4,353,443,882	179,442,564
1. 복리후생비	1,635,579,441	1,434,412,240	201,167,201
2. 여비교통비	9,391,400	26,141,651	(-)16,750,251
3. 통신비	27,300,630	25,924,450	1,376,180
4. 전기수도료	519,084,790	532,268,140	(-)13,183,350
5. 세금과공과	152,395,527	161,518,010	(-)9,122,483
6. 보험료	8,939,064	4,499,010	4,440,054
7. 환경관리비	78,258,590	50,476,790	27,781,800
8. 지급임차료	46,133,410	41,669,390	4,464,020
9. 지급수수료	146,925,212	140,495,836	6,429,376
10. 수선비	554,794,430	443,682,568	111,111,862
11. 차량유지비	12,559,733	17,199,966	(-)4,640,233
12. 교육훈련비	14,686,536	21,343,600	(-)6,657,064
13. 도서인쇄비	42,513,779	6,919,110	35,594,669

과 목	37(당기)	제36(전기)	차 감
	금 액	금 액	(당기-전기)
14. 접대비	27,727,480	24,845,380	2,882,100
15. 행사비	4,074,990	846,300	3,228,690
16. 연료비	52,274,120	58,039,090	(-)5,764,970
17. 의료사회사업비	116,889,960	118,385,268	(-)1,495,308
18. 소모품비	108,949,240	93,941,085	15,008,155
19. 감가상각비	373,464,131	360,300,241	13,163,890
20. 광고선전비	5,143,520	11,948,360	(-)6,804,840
21. 대손상각비	33,842,323	19,167,506	14,674,817
22. 피복침구비	54,796,000	36,989,750	17,806,250
23. 외주용역비	366,221,420	210,847,861	155,373,559
24. 의료분쟁비용	5,474,090	157,000,000	(-)151,525,910
25. 기타관리비	34,461,430	353,198,160	(-)318,736,730
26. 잡비	101,005,200	1,384,120	99,621,080
III. 의료이익(손실)	(-)4,545,246,884	(-)254,210,739	(-)4,291,036,145
IV. 의료외수익	6,625,423,462	1,138,431,686	5,486,991,776
1. 의료부대수익	147,606,160	273,875,640	(-)126,269,480
2. 임대료수익	31,145,332	37,620,000	(-)6,474,668
3. 연구중심병원연구수익	72,104,310	-	72,104,310
4. 수탁사업수익	439,936,000	216,000,000	223,936,000
5. 이자수익	118,056,506	91,799,408	26,257,098
6. 유형자산처분이익	14,811,894	34,512,000	(-)19,700,106
7. 기부금수익	5,722,998,240	303,588,000	5,419,410,240
8. 잡이익	78,765,020	181,036,638	(-)102,271,618
V. 의료외비용	729,838,663	517,311,161	212,527,502
1. 의료부대비용	88,393,167	172,774,000	(-)84,380,833
2. 수탁진료사업비용	405,486,230	216,000,000	189,486,230
3. 이자비용	67,393,150	76,693,152	(-)9,300,002
4. 연구중심병원연구비용	63,605,350	-	63,605,350
5. 유형자산처분손실	43,994	23,000	20,994
6. 잡손실	104,916,772	51,821,009	53,095,763
VI.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350,337,915	366,909,786	983,428,129
VII. 법인세비용			
VI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 당기순이익	1,350,337,915	366,909,786	983,428,129
X.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36,609,505	36,609,505	-
XI. 당기순이익(손실)	1,386,947,420	403,519,291	983,428,129

※ 기타사항 : 상기에 공표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